

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결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4. 9. 16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4. 9. 22

다. 상정일자 : 제35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'94. 9. 28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성 종 무)

가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내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동사 신축비 일부를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, 사업시행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대상사업 : 괴정3동사 신축
- 발행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발 행 금 액	차 입 선	발 행 조 건	차 입 시 기	상 환 재 원
200	지방재정공제회 (청사정비기금)	연리 3% 2년거치 10년 균분 상환	'94. 12	지방비(구비)

○ 사업계획

- ▶ 사업목적 : 구 보건소청사 위치에 동사신축하여 주민편의 및 업무능률향상에 기여
- ▶ 사업개요 및 재원확보 상황

(단위 : 백만원)

공 종 별	사 업 개 요	사 업 비		
		계	지 방 비 (구 비)	지 방 채
계		1,081	881	200
보 상 비	건물 6동	56	56	—
공 사 비	지하 1층, 지상 3층 (대지 1,216㎡)	998	798	200
부 대 비	설계비등	27	27	—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지방채의 발행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에 연리 3%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고 현재까지 지방채가 49억52백만원(원금 38억22백만원, 이자 11억3천만원)으로 우리구 총예산 규모 655억9천 8백만원의 7.5%를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 우리구의 재정실정을 살펴볼 때 투자 재원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영구적 재산이 될 동사무소 신축비에 투자할 재원 일부를 기재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